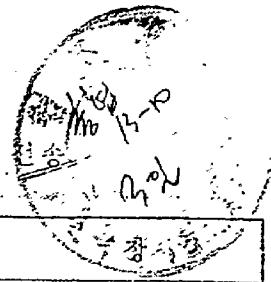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백령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31-6359



문서번호 재개58551-022

시행일자 93.04.17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7:1903-  
121

취급		시
보존		
주택 극장	전 결	영 70
재개발과장		법무담당관 짐사팔 (고시심사)
사업 2계장		행정 계장 16
기안	이 남 신	계획 계장 21
		합조

제목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 고시 제380(78.11.30)호로 구역지정되고, 시 고시 제626호(83.11.25)로 사업계획 결정된 동자동구역 제8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93년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바, 별첨 회의록과 같이 의결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역	지구명	내용	비고
동자동 구역	제 8지구	건축계획 변경	

첨부 회의록 사본 1부 및 고시문 1부. 끝.

(제 2안)

수신 용산구 동자동 14-77 (주)세준공영 대표 이 동건

제목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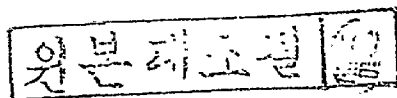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동자동구역 제 8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은 별첨 고시안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고시안 사본 1부. 끝.

(제 3안)

수신 건설부 장관

참조 도시정비과장



제목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보고

1. 도심지재개발사업 동자동구역 제 8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4안)

수신 총무처 장관

제목 관보 게재의뢰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종별 : 고시문

나. 게재건명 :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

다. 게재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3호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 5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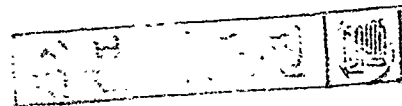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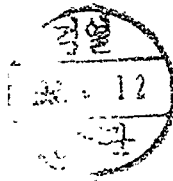
수신 : 용산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도심지재개발사업 변경 결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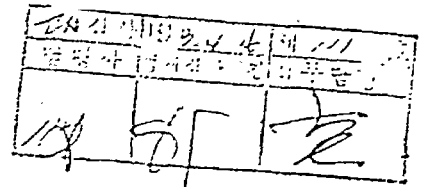
1. 도심지재개발사업 동자동구역 제 6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할것.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3-121 호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쿤차



1. 도심지재개발사업 구역중 건설부 고시 제380호(78.11.30)로 구역 지정 되고 시고시 제636호(83.11.25)로 사업계획 결정된 동자동구역 제8지구의 도심지재개발사업 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용산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 4. 17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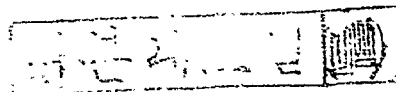
다 음

가. 사업명칭 : 동자동구역 제8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용산구 동자동 14번지 일대

○ 건축계획 변경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주용도	비고
동자동 구역 제8지구	기정	5,833.20	40이하	619이하	20/5	업무 및 판매	
	변경	"	42 ~ 46	870 ~ 950	22/7	업무시설 주용도 시설택 시설택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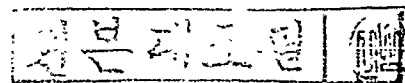


1) 변경사유및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재개발 구역 지정시 용도가 업무및 판매시설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규모를 축소시켜 그 영향을 적게 하고, 그 대신 전체건물의 35%의 규모로 공동주택을 설치하여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서울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위하여 그 규모와 용도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과 건축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변경내용 :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용도
기존	5,833.2 m <sup>2</sup>	36.3%	696.1%	지하5층 지상20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변경	5,833.2 m <sup>2</sup>	44.01%	912.62%	지하7층 지상22층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APT 9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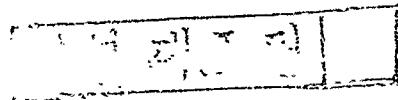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제 8 지구 14번지 일대
지 역 지 구	일반상업지역 , 주차장 정비지구
대 지 면 적	5,833.20 m <sup>2</sup> ( 1,764.54 평 )
건 축 면 적	2,567.07 m <sup>2</sup> ( 776.54 평 )
지하층 연면적	32,765.62 m <sup>2</sup> ( 9,911.56 평 )
지상층 연면적	53,234.87 m <sup>2</sup> ( 16,103.48 평 )
연 면 적	86,004.49 m <sup>2</sup> ( 26,015.03 평 )
건 폐 율	44.01 %
용 적 율	912.62 %
구조 및 층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7층 - 지상 22층
용 도	업무시설, 공동주택 (94세대), 운동시설, 판매시설
주 차 대 수	법정: 530 대, 계획: 662대 (124.91%)
조 경 면 적	902.69 m <sup>2</sup> ( 15.48 % )

■ 공동주택 평형별 세대면적

형 별	세 대 수	전 용 면 적	
		m <sup>2</sup>	평
A	54	165.24	49.98
B	40	158.85	48.05
계	94		



■ 층별 면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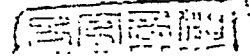
층 별	면 적		용 도
	m <sup>2</sup>	평	
지 하 7층	5,093.59	1,540.80	기계.전기실 / 주차장
6층	3,165.70	957.62	주 차 장
3 - 5 층	5,093.59 x 3 = 15,280.77	1,540.80 x 3 = 4,622.41	주 차 장
2층	5,093.59	1,540.80	주차장 / 운동시설
1층	4,131.97	1,249.92	판매시설 / 운동시설
소 계	32,765.62	9,911.56	
지상 1층	2,341.13	708.19	업무시설(은행)/로비/판매시설
2층	2,120.34	641.40	업 무 시 설
3 - 12 층	2,567.07 x 10 = 25,670.70	776.54 x 10 = 7,765.35	업 무 시 설
13층	2,567.07	776.54	공 동 주 택
14층	2,519.07	762.02	공 동 주 택
15 - 22 층	2,252.07 x 8 = 18,016.56	681.25 x 8 = 5,449.98	공 동 주 택
소 계	53,234.87	16,103.48	공 동 주 택
총 계	86,000.49	26,015.03	
주차대수 산출근거			인도
업무시설	30,654.52 m <sup>2</sup> / 100 m <sup>2</sup> = 306.55대		계획주차대수 옥외 : 9대 옥내 : 653대
판매시설	2,416.41 m <sup>2</sup> / 100 m <sup>2</sup> = 24.16대		
공동주택	24,025.26 m <sup>2</sup> / 150 m <sup>2</sup> = 160.17대		
운동시설	5,795.51 m <sup>2</sup> / 150 m <sup>2</sup> = 38.64대		
계	530대		662대







198 年 7 月 23 日


 198 年 7 月 23 日